**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04호**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0호, 2016.9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**2016년 10월 31일**

**보건복지부장관**

부 칙

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가10 격리실 입원료　 |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급여여부 | 호흡기 결핵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- 다 음 -가. 적응증결핵균이 증명되기 전에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소견 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나. 격리기간객담 도말검사 상 3회 연속(수일간격) 음성이며,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함. 다만,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(증상, 방사선학적 이상소견, 결핵환자 접촉 등)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. |